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. 효력발생일 : 2023.10.27

3. 정정사유

- 클래스 신설
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집합투자규약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|--|--|
| 클래스 신설 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~9. <생략></p> <p>10. CLASS P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<추가></p> <p>11. <생략></p> <p><신설></p> | 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~9. <좌동></p> <p>10. CLASS P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 <p>11. <좌동></p> <p>12. CLASS P-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 <p>13. CLASS S-P1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 |
| 클래스 신설 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<생략></p> | 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<좌동></p> |

| | | |
|--------|--|---|
| | 1~11. <생략> <신설> | 1~11. <좌동> 12. CLASS P-e 수익증권 13. CLASS S-P1 수익증권 |
| 클래스 신설 | 제39조(보수) ③ <생략> 1~11. <생략> <신설> | 제39조(보수) ③ <좌동> 1~11. <좌동> 12. CLASS P-e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42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13. CLASS S-P1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21%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%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1 % |

<투자설명서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 | 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
| 클래스 신설 | 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 | 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lass P-e: E7255 / ClassS-P1: E7257 |
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 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
| 클래스 신설 | 제2부. 11. 가. (2) 종류별 가입자격,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<추가> | 제2부. 11. 가. (2) 종류별 가입자격, 13.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P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 |

| | | |
|--------|---|---|
| | <신설> |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P-e)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1)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 |
| 클래스 신설 | 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(연간, %) <신설> | 제2부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(연간, %) <표1> |

<간이투자설명서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 |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|

<표1>

| 구분 | 지급비율(순자산총액의 %, 연)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집합투자 업자보수 | 판매회사 보수 | 신탁업자 보수 |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| 총보수 | 기타 비용 | 총보수 · 비용 | (동종유형 총보수) | 합성 총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) | 증권 거래 비용 |
| P-e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퇴직연금 | 0.1000 | 0.4200 | 0.0300 | 0.0100 | 0.5600 | - | 0.5600 | - | 1.5238 | - |
| S-P1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퇴직연금 | 0.1000 | 0.2100 | 0.0300 | 0.0100 | 0.3500 | - | 0.3500 | - | 1.3138 | - |

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|---|--------|
| 지급시기 |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| 사유 발생시 | - | - | - | 사유 발생시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|---|--------|

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·비용

| 구분 | | 투자기간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| 1 년후 | 2 년후 | 3 년후 | 5 년후 | 10 년후 |
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- 퇴직연금(P-e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57 | 117 | 179 | 313 | 701 |
|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| 155 | 316 | 482 | 831 | 1,815 |
| 수수료미징구- 온라인슈퍼- 퇴직연금(S-P1)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| 36 | 73 | 113 | 197 | 443 |
| |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) | 134 | 273 | 416 | 720 | 1,582 |